

증평균 보건소 수가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100호]

개정 2004. 6. 30 조례 제 119호
개정 2005. 10. 19 조례 제 171호
일부개정 2012. 5. 18 조례 제 424호
일부개정 2013. 11. 22 조례 제 509호
일부개정 2017. 9. 29 조례 제 769호
(증평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14 조례 제 839호
(증평균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9. 12. 26 조례 제 909호
(증평균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23. 7. 28 조례 제1099호
(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균
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
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19, 2012. 5.
18, 2018. 12. 14>

제2조(진료비)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
말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으로 한다. <개정
2004. 6. 30, 2005. 10. 19, 2012. 5. 18>

제4조 삭제 <2004. 6. 30>

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
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<개정 2005. 10. 19>

제6조(기타 수가)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2. 5.
18, 2013. 11. 22>

②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보철 등
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8>

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. <개정 2012. 5.
18>

[제목개정 2012. 5. 18]

제6조의2(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수수료) 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군수가 고시하여 징수한다.

[본조신설 2005. 10. 19]

제7조(증명발급 및 수수료)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)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6. 30, 2005. 10. 19, 2012. 5. 18, 2017. 9. 29, 2019. 12. 26, 2023. 7. 28>

1. 증평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
2.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3.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
4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
5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. 다만,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6. 「증평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. 다만, 응급투약에 한한다.

제9조(납부)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제10조(추징)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8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4. 6. 30 조례 제11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5. 10. 19 조례 제17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5. 18 조례 제42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11. 22 조례 제50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9. 29 조례 제769호,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

부칙(2018. 12. 14 조례 제83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조례 제909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7. 28 조례 제1099호,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3. 11. 22>

골다공증 검사 수가기준

종 목	진 료 내 용	수 가 결 정 액
골다공증검사	골다공증검사	10,000원

[별표 2] <개정 2018. 12. 14>

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
1. 근로자 건강진단	1통	800
2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(삭제)	"	1,000
3. 일반진단서	"	600
4. 특별진단서	"	2,500
5. 사체검안서	"	7,000
6. 성별 및 연령 감정서	"	2,500
7.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	"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
8. 사망진단서	"	550
9.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	"	550
10.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	"	350
11. 1통 초과시 (위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)	1통당	150
12.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서	1통	800
13.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체·적성검사서	1통	800
14. 기발급 증명서 온라인 추가발급	제한 없음	무료

[별지 1]

입 원 서 약 서

입원년월일	병 석	호 실	등 급	입원보증금	퇴원예정일

주 소 :

성 명 :

직 업 :

위 사람은 금번 귀 보건소에 입원치료를 요함에 있어 귀군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 요금 등을 지정기일내에 지체없이 납부함은 물론 치료상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타 본인이 신상 일체를 인수키로 보증인 연서로 서약함.

년 월 일

본인 (인)

보증인 주소

성명 (인)